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96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 항소인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사업소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군수

6. [redacted]군수

피고 1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피고 2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4구합688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6.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의 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redacted]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3,573,106,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7. 17.,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이 2013. 7. 4.,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3. 6. 12., 피고 [redacted]군수가 2013. 6. 10., 피고 [redacted]군수가 2013. 6. 7. 제1심 판결 별지2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기재 취득세 본세 합계 2,683,14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표 아래 제5행까지 및 제62쪽부터 제63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가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8.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도 제105조 제1항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더구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과세실무는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제도에 착안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별로 취득세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세실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제2호)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납세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단서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의 의미에 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로 각각 규정하여 이 또한 일률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은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을 뿐이고, 등록관청은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도 사용본거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사실상 추단하고 있고,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4) 더구나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개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러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사정도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실제로 차량을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지를 어느 시점 내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원칙적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는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를 이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등록관청인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각 지점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등록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지점이고, 등록관청인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22

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군수,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